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19가단1315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4. 23.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9. 19.자 증여계약은 21,375,027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375,02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D은행으로부터 전전양수받은 C에 대한 대여금 채무와 관련해 서울동지방법원 2018차전29879로 15,205,922원과 그 중 1,874,282원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고지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8. 1. 8.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E은 2014. 2. 18.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위 대출금 채권을 F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가 2018. 5. 29. 양수하였는데, 위 지급명령과 주식회사 E의 대출금 채권을 2021. 4. 23.자로 계산하면 그 금액은 21,375,027원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C의 소유였다가 2015. 8. 27. G단체로 C에 대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되었다. 2018. 9. 19. 위 신탁등기가 말소되면서 피고에게 같은 날자 증여를 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같은 날 주식회사 H으로 담보신탁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대출받은 5,000만 원 중 4,205만 원이 C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급되었다.

한편 C은 2017. 6.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2018. 9. 19. 당시의 시가는 80,906,600원이고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는 97,739,76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감정인 I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그 이후 담보신탁에 해당하는 액수를 변제하고 이를 다시 신탁하였고 그 중 일반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55,689,760원의 일부인 21,375,027원의 범위 내에서 위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5. 9. 2. G단체에 신탁되면서 C이 사실상 소유권을

있었고, 대출상의 편의를 위해 피고에게 일시 소유권이 넘어왔다가 다시 주식회사 H에 대출을 받은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처분 행위는 2015. 9. 2.에 발생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다룬다.

나. 판단

살피건대 2015. 9. 2. G단체에 신탁된 것은 그 것이 처분을 위한 신탁이 아닌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담보신탁에 불과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에 대한 증여 당시 부동산의 시가가 80,906,600원으로 담보신탁에 의한 우선권이 있는 대출금 4,205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8,856,600원은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바, 그 신탁이 종료되면서 피고에게 증여된 뒤 피고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다시 주식회사 H에 담보신탁을 한 이상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2015. 9. 2. 처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유일한 재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행위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상당액의 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설민수

[별지]

부동산 목록

1. 강원도 홍원군 대 433㎡

2. 강원도 홍원군

[도로명주소] 강원도 홍원군

시멘트블록조 스테이트지붕 2층 주택

1층 36.84㎡(단독주택)

2층 36.84㎡(단독주택)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테이트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99.37㎡

시멘트블록조 스테이트지붕 단층주택 49.50㎡

문.

